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2023. 3차 개정

[2023. 10. 26]

K O T R A

[목 차]

I . 개요		4
1. 용어의 정의		4
2. 정산가이드 활용목적		5
3. 관련 법률 및 지침		5
4. 수행기관 정산 기준과의 관계		5
5. 적용 시점		5
II . 적용범위 및 정산 일반사항		6
1. 적용 범위		6
2. 공통 적용 지침		8
III . 서비스 대분류별 정산지침		11
1. 조사/일반 컨설팅		11
2. 디자인개발		13
3. 브랜드개발/관리		16
4. 홍보동영상		18
5. 통번역		20
6. 역량강화교육		21
7.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2
8. 해외규격인증.....		26
9. 특허/지재권		28
10. 홍보/광고		30
11. 국제운송		32
12. 서류대행/현지등록		34
13.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36
IV. 참여기업의 사후개별정산 관련 지침		37
1. 적용 범위		37
2. 유형별 정산 지침		38
가.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38
나. 항공임 지원		41
다. 해외홍보/광고		43
라. 해외규격인증		44
마. 국제운송		45
바. 무역보험·보증		47

V. 별지 정산 관련 양식

1. [별지 제1호]수출바우처사업 결과보고서
2. [별지 제2호]전시회 상담실적 양식
3. [별지 제3호]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서 양식(사후정산, 지정수행기관)
4. [별지 제4호]해외전시회 사후정산 서약서
5. [별지 제5호]참여기업 왕복 국제항공임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6. [별지 제6호]해외납부세금 환급 관련 서약서
7. [별지 제7호]인코텀즈 거래조건별 비용요소 부담 주체 및 정산 대상
8. [별지 제8호]국제운송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
9. [별지 제9호]해외홍보광고 결과보고서 양식 (세부 1,2호)
9. [별지 제9-3호]해외홍보광고 정산가이드 상세 안내자료
10. [별지 제10호]해외홍보광고 세부 분야별 표준 단가
11. [별지 제11호]디자인개발 정산가이드 및 단가
12. [별지 제12호]특허지재권 분야_해외 IP 권리화 기준 단가
13. [별지 제13호]컨설팅분야단가
14. [별지 제14호]선금신청 시 표준계약서
15. [별지 제15-1호]국제운송 결과보고서 - 물류비 세부내역(일반)
15. [별지 제15-2호]국제운송 결과보고서 - 물류비 세부내역(특송)
16. [별지 제16호] 컨설팅 서비스 수행 계획서 양식 (사전검토양식)
17. [별지 제17호] 세부산출 내역서 (세부 1,2,3,4호)
18. [별지 제18호] 참여인력 투입률 확인서
19. [별지 디렉토리] 디자인개발 분야 결과보고서 및 정산가이드
20. [별지 디렉토리] 해외규격인증 정산가이드
21. [별지 디렉토리] 홍보동영상 분야 결과보고서 및 정산가이드

I. 개요

1.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리기관”이란 시행계획 수립, 사업홍보,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 온라인 시스템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 지정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나. “운영기관”이란 KOTRA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 협약체결, 점검, 사업비의 집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으로 KOTRA의 각 해당 부서를 말한다.

다. “참여기업”이란 운영기관의 평가를 거쳐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라. “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지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 “총괄수행기관”이란 특정 수출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해 관리기관으로부터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 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바. “사후정산”이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전시회 참가에 따른 해외항공임,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비용에 대해 수행기관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참여기업이 직접 서비스 진행 후, 운영기관에 청구하는 정산 방식을 말한다.

사. “관리지침”이란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관리 및 개정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지침을 말한다.

아. “운영지침”이란 각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이 수립·개정하는 지침을 말한다.

자. “협약기간”이란 참여기업 협약서 제 16조(협약기간)상 명시된 협약기간을 말한다.

차. “서비스 계약기간”이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 간의 서비스 계약서 상 명시된 서비스 수행기간을 말한다

② 본 정산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 및 각 운영기관별 세부사업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2. 정산가이드 활용 목적

본 정산가이드는 KOTRA의 수출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KOTRA, 참여기업, 수행기관과의 사업비 정산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3. 관련법률 및 지침

가. 본 정산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 및 각 운영기관별 세부사업의 운영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기타 관계 법령을 따른다.

나. 관리지침과 본 정산가이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4. 수행기관 정산 기준과의 관계

가. KOTRA가 수행기관으로서 KOTRA 참여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OTRA 내부 예산운영 및 정산지침 등을 따른다.

나. KOTRA가 수행기관으로서 他운영기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정산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OTRA 내부 예산운영 및 정산지침 등을 따른다.

5. 적용 시점

본 정산가이드는 수출바우처포털(www.exportvoucher.com)상 공고일('23.04.21)부터 적용한다. 단, 지침개정 공고일 이전에 체결된 서비스 계약일 경우* KOTRA 운영기관과 협의 후 이전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2023년 참여기업의 경우, 바우처 협약 시작일(2023.2.1.) 이후 체결한 서비스 계약 건에 대해 동 정산가이드를 소급 적용한다.

* 2023년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정산은 11월15일 24시까지를 신청 마감일로 함 (수행기관 서비스, 사후정산 공통)

II . 적용범위 및 정산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아래 표의 14개 대분류에 속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대상 서비스(대분류 기준)>

연번	수출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수출준비	조사/ 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법무세무회계 제외)	(조사)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컨설팅)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해외 수출 전략 수립 및 이행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 진출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SMETA 획득지원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2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3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5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6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연번	수출단계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7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수출이행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위생, 할랄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등록 서비스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9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특허·지재권 분쟁지원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온라인 포함)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홍보 마케팅, IMC 마케팅, 클라우드펀딩플랫폼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1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 제외)
12	수출 후속관리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AEO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3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수출목적의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세무조사, 세무자문, 회계감사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4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 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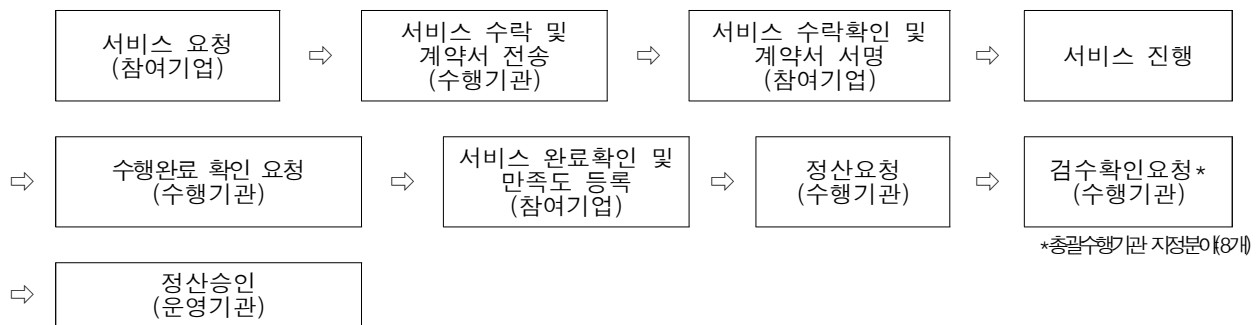
담당 검수분야	총괄 수행기관(문의처)
조사/일반컨설팅, 브랜드개발·관리, 법무·세무·회계컨설팅, 서류대행/현지등록	한국표준협회 02-6240-4789
디자인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184
특허/지재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15 02-3287-4308
해외규격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749
국제운송	한국국제물류협회 02-733-8000
홍보동영상,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무역보험·보증	KOTRA 02-6004-8400

* 수행기관의 서비스 등록 및 검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별도 검수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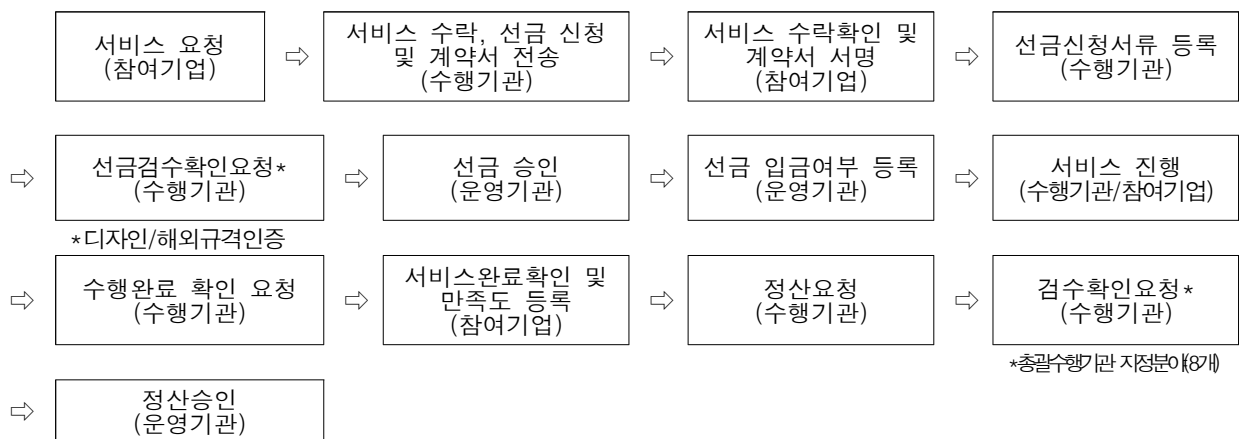
2. 공통 적용 지침

가. 정산 원칙

- (과업범위 사전명시) 모든 서비스는 협약 완료 이전에 과업 범위를 서비스 신청내역, 특약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메뉴판의 내용과 과업범위가 일치하여 부가 명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명시가 불요하다.
- (서비스 완료 후 정산) 수행기관은 반드시 수출바우처포털을 통해 참여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후 참여기업이 서비스 완료 확인을 한 뒤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¹⁾
- (정산신청기한)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서비스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 정산 신청을 해야한다.



- (선금신청) 관리지침 제27조 제5항에 따라 서비스 공급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서비스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의 동의하에 공급가액의 50%까지 선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정산보완기한) 정산 요청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운영기관은 정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2주일 이내에 반드시 정산 증빙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보완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불성실 이행시 정산을 거절할 수 있다.**

1) 단, 해외규격인증은 예외적으로 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의 발급일이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 인 경우 협약 기간 전 서비스 개시가 되었더라도 정산할 수 있으나, 해외인증규격 분야 총괄수행기관에 정산 요청 전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해외 현지세금 정산)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 기관기업에 일부를 위탁하여 진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현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사후정산으로 현지 세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에도 정산 가능하다. 단, 현지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법인의 결산에서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정산할 수 없다.
- * 필수구비서류 : 해외 납부 세금 미환급 서약서 [별지 제6호]
- (해외민간네트워크(국외유형) 정산) 서비스 계약 체결 전, KOTRA 외화 집행환율 및 해외무역관 정산지침을 준수하여, 송금 관련 기타 세부사항을 KOTRA 운영부서와 협의 후 확정한다.

나. 제출 증빙

- (공통 증빙) 수행기관은 KOTRA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해야하며, 누락 시 정산이 거절될 수 있다.
 - 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 참조]
 - 세금 계산서 또는 해외수행기관 인보이스 * 예금주 SWIFTCODE,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주소 등 명기 필수
 - 참여기업의 부가세 입금* 확인증 * 카드결제, 현금거래 인정 불가
 -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된 인보이스
 - 송금증 * 외화 송금증에 적용환율 미표기 시, 송금일 기준 KEB 매매기준을 캡처화면 제출 필수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에 맞는 증빙 * 무통장입금, 현금지급 인정 불가
 - 기타 서비스 대분류별로 KOTRA 운영기관 및 총괄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해외 현지세금 발생 시 해외 납부 세금 미환급 서약서 [별지 제6호]
- (선금 증빙) 수행기관은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선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 표준계약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매(KOTRA용, 참여기업용)
 - 선금세금계산서
 - 부가세 입금확인증
 - 입금통장사본 제출

다. 정산 불가 원칙

- (정산불가 세부 항목) 아래 세부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불가하다.
 - 참여기업 인건비 및 제경비(예. 기업 통신비), 출장비²⁾(예. 항공임³⁾, 숙박비 등)

2) 단,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5개사 이상이 참가하는 '역량강화교육' 분류 내 단체 해외 연수 서비스의 경우, 수행기관이 일괄 구매집행 하는 항공임, 숙박비는 정산할 수 있다.

3) [전시회/행사/해외영업]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해당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진된 항공임을 참여기업은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VII. 라. 항공임 사후정산 참고]

- 자산 취득비, 샘플 제작비,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
- 해외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 해외현지세금(현지 세금을 환급받았을 경우, 법인 결산 해외납부세액 공제 시)
- (이중(二重) 지원의 금지) 참여기업은 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다른 국고 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받은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없다. 이중 지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반드시 KOTRA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민간네트워크의 국내 지사*가 아닌 기타 에이전트, 유관업체에서 수행한 경우 정산이 불가하다
 - * 필수구비서류 : 현지 법인등록증 주거은행의 해외직접투자기고서 및 해외투자계획서 등 해외민간네트워크의 관계 증명 서류
- (해외송금액) 인보이스 상 명시된 해외 계좌정보가 아닌 타 계좌 및 기타 국내 계좌로의 정산은 불가하다.

라. 정산 범위 판단 권한 및 사전 확인 의무

-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 세부 항목의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총괄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의 권한은 KOTRA 운영기관에 있다.
- 수행기관은 정산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각 서비스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총괄수행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 KOTRA 운영기관에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KOTRA 운영 바우처 사업 및 운영기관 (2023.9.1.기준)>

사업명	KOTRA 운영기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수출바우처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중견기업팀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KOTRA 경기지원단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KOTRA 광주전남지원단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지원사업	KOTRA 충북지원단
충북 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마. KOTRA 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범위 조정

- KOTRA 운영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기업의 서비스 이용 범위 (대분류, 세부유형, 금액한도 등)를 조정할 수 있다.
- 상기 조정 내역은 KOTRA 운영기관 - 참여기업 간 협약서 또는 정산가이드 또는 정산가이드 별지 양식에 명시되어야 한다.

Ⅲ . 서비스 대분류별 정산지침

1

조사/일반 컨설팅 수출관련 정보조사 및 일반컨설팅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해외 시장·제품·기업·전략·법규 정보 제공 목적의 조사 및 컨설팅 활동
- 해외 시장·제품·기업·전략·법규 정보 확보를 위한 현지기업접촉 및 상담 활동
- 조사·컨설팅 서비스 활동에 수반되는 자료 구매
- SMETA 인증 획득
 - *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 노사문제, 환경보호 등 윤리 경영여부를 제3기관에게 심사받는 감사제도
 - 신규심사(Initial), 확인심사(Follow-up), 갱신심사(Re-Audit), SMETA 관련 컨설팅
 - Non-Compliance 및 Observation 항목 발생으로 인한 확인심사 지원가능
 - 참여기업의 수출바우처 협약기간 내 심사완료 및 감사보고서가 인증기관(SEDEX)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각종 상기 서비스 결과물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번역 활동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표준 결과보고서 [별지 제 1호]
- ④ 컨설팅 완료보고서
 - * 수행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한 보고서이며, '③ 표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⑤ 표준 세부산출내역서
 - *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 [별지 제 17-1호] 적용/제출
 - *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이하 시 : [별지 제 17-2호] 적용/제출
 - * 해외기업 신용실태 조사 서비스 : 자사 양식
- ⑥ 참여인력 투입률 확인서 [별지 제 18호]
 - *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제출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규투입인력 발생시 제출)
- ⑧ 투입인력 경력증빙자료(신규투입인력 발생시 제출)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 조사 / 일반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직접비용 (인증비, 심사비, 설립비용, 소송비 등)
- 다수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동일 기간 내 수행기관 참여인력 투입률* 100% 초과 시 초과 투입률에 대한 인건비
 - * 단,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적용
- 수행기관-참여기업 간 중복된 컨설팅 서비스 존재 및 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판단되는 경우
- 인용된 내용에 출처가 없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 * 표절검사 시 6어절 기준 표절률이 30% 이상 또는 자기표절률이 50% 이상인 경우
- 조사 / 일반컨설팅 서비스 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단순 자료 구매
- 해외 고객용 제안서

기타 주의 사항

- [별지 제13호] 세부 분야별 표준 단가 적용
- 서비스금액 4천만원 초과 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괄수행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별지 제16호]를 따라 제출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해외 수출용 제품 디자인 개발
- 해외 수출용 제품의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 외국어 홈페이지, GUI개발, 상품페이지 제작
 - GUI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제외한 디자인 비용
 - 홈페이지의 경우 개발(제작)비용 포함
- 기업 및 상품의 외국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제작
- BI·CI 및 어플리케이션(BI, CI의 적용 가이드)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검수요청서류 (웹하드, 수출바우처포털 업로드)	정산증빙서류 (수출바우처포털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분야 결과보고서 [별지 제 19호] ○ 디자인 결과물 ○ 전문인력 확인서 *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https://designfirm.kidp.or.kr/) ○ 전문인력 참여율 투입율 확인서 [별지 제 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제출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③ 직접비 증빙서류 ④ 세부산출내역서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⑥ 통장사본 * 선금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계약서 [별지 제14호]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③ 선금 세금계산서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⑤ 입금통장 사본

- 상세사항 [별지 제 19호] 디자인 개발분야 정산가이드 및 양식 확인 요망

정산 불가 항목

[결과물 및 비목 기준]

- 디자인대가기준 표준품셈(패키지디자인) 기준 S 난이도 디자인
 - * 대가기준 표준품셈 : www.dsninfo.or.kr/main/index.do
- 디자인분야 총괄수행기관이 정산 불가로 지정한 지출 항목
- 동일 수행기관, 참여기업간 다수 계약 체결 시 중복하여 산정된 직접비
- 다수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동일 기간 내 수행기관 참여인력 투입률* 100% 초과 시 초과 투입률에 대한 인건비
- 한국어 기반 디자인 개발
- 일반 판촉물(포스터, 배너 등) 제작 및 인쇄비
- 타 지원 서비스 분야의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분야 일체
 - *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지식재산권 분석, 브랜드 및 CI/BI 컨설팅 및 개발, 인플루언서 활용, 번역, 랜딩 페이지 개발 등
- 디자인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 * 기존 결과물의 일부 내용 추가 보완 및 기능 개선 또는 유지보수 등
 - * 완성 결과물의 출력·양산 등 제작비
 - * 동일 내용의 결과물을 단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경우

[예) 영문 카탈로그를 영문으로 정산 후, 일부 이미지만 변경하여 중국어 카탈로그 제출하는 경우]

[정산 불가 사유 기준]

- 직접비 지출 관련 영수증/입금증/계산서 등 미제출 시
- 수행기관이 서비스 계약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수행 내용을 허위 제출 시
- 결과보고서 검수 지침 미준수 및 보완 요청에 대한 불성실 대응 시
 - * 1개 서비스 구매번호 당 정산 보완이 3회를 초과할 경우 정산 거절

직접비 항목

항 목	내 용
장비비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별히 임대하는 장비의 비용 단, 소프트웨어 사용/구매비용은 제외
모형제작비	Mock-up 및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시안비	시각물 제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샘플 제작 비용
프리프로덕션비	최종 제작 전, 인쇄 및 후가공 확인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비용
자료조사비	시장조사비, 각종 리서치비용 등 포함
재료비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의 비용
촬영비	작가료, 모델료, 스타일리스트, 스튜디오 렌트료 등을 포함한 촬영비용
전문가활용비	작가료, 모델료, 스타일리스트 등 전문가 활용비

※ 촬영, 샘플작업, 목업제작 등을 내부인력으로 수행한 경우 직접비와 중복 책정 불가

기타 주의 사항

- 구매번호 1개당 결과물 1건 제출 필수
- 인건비, 제경비, 창작료 이외 정산항목의 경우 실비정산이 원칙
- 디자인 목업 제작 관련 인건비는 수행기관 자체 진행 시에만 포함 가능
- [별지 제11호] 내 디자인 개발 정산기준 및 표준단가를 따르며 변경 시, 동 분야 총괄수행기관에서 수출바우처포털 내 공지사항, 자료실을 통해 수시 공지
- 재검수(보류)건은 웹하드에 업로드 필요하며, 조건부승인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 보완 결과물 첨부 후 재검수 요청 필요
- 수출바우처포털 및 웹하드에 각각의 결과물과 요구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해야 정상 접수 및 검수가능
- 이외 추가 양식은 [별지 제 19호] 디자인 개발 분야 양식 디렉토리 참조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수출브랜드개발
 -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기업 및 제품 브랜드 개발비
- 제품매뉴얼 제작비
- 정품인증 서비스
 - 정품인증 라벨 부착, 전산 솔루션 정품인증, 위변조 방지 라벨 제작비, 외국어 랜딩페이지 제작비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표준 결과보고서 [별지 제 1호]
 - ④ 컨설팅 완료보고서
 - * 수행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한 보고서이며, '③ 표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⑤ 표준 세부산출내역서
 - *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 [별지 제 17-1호] 적용/제출
 - *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이하 시 : [별지 제 17-2호] 적용/제출
 - ⑥ 참여인력 투입률 확인서 [별지 제 18호]
 - *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제출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규투입인력 발생시 제출)
 - ⑧ 투입인력 경력증빙자료(신규투입인력 발생시 제출)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 인쇄비
- 한국어 매뉴얼 제작비
 - * 외국어/한국어 병용 제작 시 정산 가능하나(부분정산 포함) 외국어 비중이 현저히 낮을 경우 정산 불가
- 다수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동일 기간 내 수행기관 참여인력 투입률* 100% 초과 시 초과 투입률에 대한 인건비
 - * 단, 서비스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적용
- BI·CI 디자인개발 (로고 개발 등)
- 인용된 내용에 출처가 없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 * 표절검사 시 6어절 기준 표절률이 30% 이상 또는 자기표절률이 50% 이상인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별지 제13호] 세부 분야별 표준 단가 적용
- 브랜드 개발·관리 서비스에서, 서비스금액이 4천만원 초과가 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괄수행기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별지 제16]호를 따라 제출

4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동영상 제작
- 표준단가 준수 필수

기준	지원분류	지원단가 (VAT제외)	제작기준
건 당	일반형	700만원 이내	템플릿 활용 가능
	고급형	5,000만원 이내	특수촬영 등 가능

* 한도 내 계약 건 이외는 정산이 불가

* 서비스 수행 중 지원 단가 변동 시 : (단가 상향조정) 재계약 또는 추가계약, (하향조정) 계약서 수정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최초 시놉시스 및 최종 콘티
 - ④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직접비 증빙 포함)
 - ⑤ 투입인력의 성명이 기재된 최근 30일 이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⑥ 투입인력 투입률 확인서 [별지 제 21호]
 - ⑦ 전문인력 확인서 *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https://designfirm.kidp.or.kr/>)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결과물 및 비목 기준]

- 영상 전체가 한국어인 경우 또는 외국어 더빙 및 자막 표기 없는 동영상
- 국문이 들어가는 모든 동영상
 - * 한국어 나레이션 영상에 외국어 자막 활용 시, 외국어 나레이션 영상에 국문자막 활용 시
- 해외 수출을 위한 정보 전달이 없는 단순 이미지컷으로 구성된 동영상

[사유 기준]

- 다수의 결과물을 1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 PD, 작가, 촬영, 편집 등 홍보동영상 제작 주요 업무의 투입인력을 외주한 경우
-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기존의 영상을 가공(번역/더빙)한 경우
- 촬영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촬영하지 않은 경우
- 영상 콘티 및 작업 과정물이 없는 경우
- 금액 지원한도 초과하는 단가 및 계약 건의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서비스 수행 중 지원 단가 변동 시 [단가 상향조정] 재계약 또는 추가계약 [하향조정] 계약서 수정
-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인물 인터뷰는 전체 분량의 50% 이하로 허용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국문/외국어 문서의 통번역
- 해외기업 상담 관련 해외 및 국내 통번역 서비스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결과보고서[별지 제 1호] (번역결과물, 통역사진 등 증빙첨부)
 - * 문서 통번역의 경우 결과보고서 원문과 번역문 모두 제출 필수
 - ④ 통역 또는 번역사 이력서 또는 프로필, 신분증
 - ⑤ 통역 활용 사진 및 행사소개자료
 - ⑥ 직접 고용된 통번역사가 아닌 경우 단기 용역계약서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기타 주의 사항

- 전시회 통역비로 정산 받은 경우 통번역 서비스로 중복 정산신청 및 지원 불가
- 외국어→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물일 경우, 해당 업무가 수출에 필요한 사유 추가소명 필요

6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수출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해외기업)(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교육 안내자료
- ④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 ⑤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수료확인서 * 교육 참가자 참석률 정보 포함 필요
-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 참여기업이 교육 및 연수 참가를 위해 개별적으로 구매·집행하는 항공임, 숙박비
 - * 단, 5개사 이상 단체 해외연수 교육 참가를 위해 수행기관이 일괄 구매·집행하는 항공임, 숙박비는 정산 가능
-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이한 업체(지사, 협력사 등) 임직원 교육비
- 교육비 환급과정일 경우 교육비 환급분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교육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중 근무기간과 교육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
- 외국어 교육 과정일 시 최소 출석률 70% 미달하는 경우
 - * 수행기관 교육 수료기준이 70%보다 높은 경우 수행기관 교육 수료기준 출석률 적용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1. 해외/국내 전시회

○ 적용범위

-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국제전시협회 UFI 국제인증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AKEI 국제인증)

- ① **UFI 국제인증** : ufi.org 접속 → 메인화면 하단 "Events Approved by UFI being held today" → Search Events → Event Type "UFI Approved International Event" 필터링 후 조회
- ② **AKEI 국제인증** : 전시회포털 쇼알라 접속(showala.com) → 전시회 찾기 → 인증구분 "AKEI 국제인증" 필터링 후 조회

- (한시)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인증하는 2023.2.1. ~ 2023.12.31. 개최 국내 전시회이면서 동시에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

- ① 오프라인 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참석 규모가 10명 이상인 경우
- ②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개최되며, 해당 상담회에 해외바이어 참석 규모가 10명 이상인 경우
- ③ 오프라인 전시회와 영문판 온라인 전시회가 개최되며,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실시간 상담 및 견적서 발행기능을 갖춘 경우

○ 정산 지원항목

-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 부스·장비 제작 및 설치비(디자인비 포함)*, 추가 장치비(부스용 모니터 임차 등 비용)
 - * 부스, 장치 국내에서 제작 후 해외 반출시 총 제작비의 50% 한도 내 지원
- 전시 물품(샘플) 편도(국내입고지~전시장 부스 앞 구간) 운송비
 - * 국내개최 전시회 운송비, 국제특송(DHL) 및 핸드캐리비용 지원 불가
 - * 샘플운송비는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85번, 92번 및 결제방법 GN일 때만 지원되며 샘플 외 판매용 수출 물품 운송비 지원불가, 전시회 참가를 위한 샘플 현지 창고보관료 지원 가능
- 인보이스 내 명시된 전시회 주최사의 공식 홍보 마케팅 서비스*
 - * 전시회 디렉토리/카탈로그/홈페이지 내 기업 안내 게재, 특별관(부스위치) 선점, 광고 등
 - * 부스 기본제공 품목 외 추가 소모성 제품(모니터, 스피커, 프로모션 아이템 등) 임차비 지원불가
-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통역, 안내요원, 바이어 섭외 관련 서비스 비용

2. 국내·외개최 상담회/시연회/설명회/세미나/학회 등 해외진출 행사

- 장소임차비, 장치비
- 바이어 초청 왕복 항공임(이코노미) * 행사 개최지 국내 교통비(대중교통비 한정) 지원 가능
- 바이어 숙박비 * 단일 지역당 최대 3박, 1박당 25만원 한도
- 통역, 안내요원, 참가자 섭외 관련 서비스 비용
- 연사료 및 연사초청비 * 단일 지역당 최대 3박, 1박당 25만원 한도, 국내교통비(대중교통) 지원가능

3. 온라인 국제전시회

○ 적용범위

- 오프라인 전시회가 온라인 개최로 전환된 경우
- 협회 인증(UFI,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온라인 전시회

○ 정산 지원항목 : 오프라인 전시회 지원범위에 준함

- 참가등록비
- 온라인 전시 콘텐츠 제작비 * 오프라인 부스비용(임차료 및 장치비)과 동일시
- 인보이스 내 명시된 전시회 주최사의 공식 홍보 마케팅 서비스*
 - * 전시회 온라인 디렉토리/카탈로그/홈페이지 내 기업 안내 게재, 광고 등
 - * 부스 기본제공 품목 외 추가 소모성 제품(모니터, 스피커, 프로모션 아이템 등) 임차비 지원불가
-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통역, 안내요원, 바이어 섭외 관련 서비스 비용

4. 기타 해외영업 마케팅 활동

-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대행 비용: 해외전시회 연계 바이어 발굴 등
- 세일즈랩 마케팅 비용 : 현지 기업 또는 전문가 통한 마케팅 대행 서비스
- 해외영업에 필요한 시장조사 활동

제출 증빙

해외개최		국내 개최		기 타	
국제전시회	상담회/시연회/ 설명회/세미나/학회	국제전시회	상담회/시연회/ 설명회/세미나/학회	온라인 국제전시회	기타 마케팅
<p>※ 공통 제출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보이스(수행기관→참여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p>○ 전시회 참가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부스임차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필수 포함) [별지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명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업체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증빙 추가제출 - 해외바이어 상담일지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전시 주최사 공식 홍보 마케팅 서비스 이용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광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사본 및 영상녹화물 - (해당 시) 해외 납부 세금 환급 관련 서약서 [별지 제6호] - (해당 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국제인증 증빙 <p>○ 온라인 전시회 추가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시콘텐츠 제작비 <p>○ 바이어, 연사 초청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인사 명함 및 신분증(여권) 사본 - 초청인사 명의 e-ticket - 항공임 영수증, 국내교통비 증빙 - 초청인사 명의 숙박 영수증 및 루밍리스트 				<p>○ 세일즈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활동 보고서 - 세일즈랩 경력 확인서 및 이력서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별 상이함 	
<p>○ 운송비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운임 인보이스(견적서) - 세금계산서 - B/L - 수출신고필증* 또는 ATA까르네 - 패킹 리스트 등 * 거래구분 85번, 92번 한해 지원 		<p>○ (한시) AKEI 인증 국내 전시회 추가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발급 국내인증전시회 인증서 - 하기 수출지원 요소 3가지 중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발급 전시회 개최 결과보고서 (해외바이어 참석규모 증명용) ② 온라인 수출상담회 캡처본(상담일지 별도) ③ 영문판 온라인 전시회 부스 캡처본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항목 기준]

- 현지 교통운임, 체재비, 통신비
- 국제특송비, 핸드캐리 운송비
-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 자료 인쇄비
- 자산 취득비
- 전시회 주최사 공식 홍보내역 이외의 홍보비

[사유 기준]

-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 (일부 지원 포함)을 받은 경우
* 정부부처정부부처(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전시회의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
-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미인증 국내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 전시회 개최기간 전체가 협약기간 외* 발생한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전시회 기본 제공 유틸리티 비용(전기, 수도, 가스, 와이파이 등) 정산 가능
- 전시회 개최기간 일부만 협약기간 내 있어도 정산 허용
- 전시회 통역비로 정산 받은 경우, 통번역 서비스로 중복 정산신청 및 지원 불가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협약기간 내 완료된 해외 규격인증, 시험
- 협약기간 내 부분 완료된* 해외 규격인증, 시험
 - * 성실실패제도 : 수행내용이 성실하고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 시 인증 절차 비용 일부 보전가능
- 서비스 진행 과정, 정산기준, 분야별 최대 지원한도 등 세부 지원사항 관련 [별지 제 20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가이드 참조

진행 방법	참여기업은 Two-Track 으로 해외규격인증 진행 후 수출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바우처정산 진행								
(지정형) Track1 수행기관 이용	설명	.참여기업 : 등록된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계약 후 인증획득 진행 의뢰 .수행기관 : 인증획득 진행 및 결과물(결과보고서) 검수 요청 및 바우처 정산진행							
	진행 방법	수행기관 선택 참여기업	⇒	바우처 계약 참여/ 수행기관	⇒	인증획득 진행 참여/ 수행기관	⇒	검수 총괄수행	⇒
(개방형) Track2 참여기업 직접수행	설명	참여기업이 직접 시험·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획득 진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검수 요청 및 사후 정산진행							
	진행 방법	인증획득 진행 참여기업	⇒	검수 총괄수행	⇒	사후정산 운영기관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별지 제 20호]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인증결과물(인증서, 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등)
 - ④ 서약서 *지정형, 개방형 양식 구분
 - ⑤ 인보이스 또는 금액 명시된 계약서
 - ⑥ 입금통장 사본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해외상표·해외실용신안·해외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연장 서비스
 - 출원 및 등록관련 절차 대행비용, 컨설팅비용, 관납료
 - 위 서비스 결과물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번역 활동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결과보고서
- ④ 지식재산권 증빙서류(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증 등 증빙문서)
- ⑤ 세부산출내역서(자사양식)
 - [별지 제12호] 해외 IP 권리화 기준 단가표 적용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비목 기준]

- 지재권 권리 양수도 관련 비용
- 지재권 관련 행정심판, 소송 관련 비용
- 해외 환전, 송금/중개 수수료, 전신료 등 각종 수수료

[사유 기준]

- 해외진출 위한 특허/출원 관련 컨설팅이 아닌 단순 조사 컨설팅으로 확인되는 경우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재권등록 지원 관련 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출원인과 등록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공동출원 및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출원의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별지 제12호] 해외 IP 권리화 기준 단가표 적용
-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지재권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참여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지재권에 한하여 정산 가능
 - * 단, 계약 시 산출내역에 포함되는 내용 중 협약기간 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예시 :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 중 심사까지 완료된 경우
출원 및 심사관련 비용은 지원 가능하나, 등록관련 비용은 지원 불가)
 - * OA 대응 비용은 지원 (단, 타인 출원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외)
- 특허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등 수출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특허/지재권 관련 서비스는 사전에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 검토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해외 TV·신문·잡지·PPL 홍보
 - 해외 TV, 신문(온라인 포함), 전문 잡지(온라인 포함),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 게재 비용
 - * 해외 전문 잡지 및 간행물의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이 등록된 경우 지원
 - 해외 고객 대상으로 한 공중파(케이블 등 포함) 및 웹드라마 활용 PPL비용
- SNS·검색엔진 마케팅
 - SNS 및 포털사이트 검색, 배너광고, 동영상 광고 등
 - 해외 B2C, B2B 사이트 등록비
-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마케팅
-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표준 결과보고서 [별지 제9-1호]
 - ④ 수행기관 - 방송사/신문사, 인플루언서 소속사 등 광고 계약서
 - ⑤ 홍보 결과물 * 광고 사본, 영상녹화물, SNS·검색엔진 마케팅 이용 결과 리포트 등
 - ⑥ 기타 세부 유형별 추가 증빙 [별지 제 9-3호]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결과물 기준]

- 국내 매체 광고 및 한국어 광고
- 해외 현지 입간판, 옥외광고
- 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임차료, 장치비 등
- 전단지(단순 인쇄), 유사 신문 등 정식 매체로 등록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홍보
- 개별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광고
-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록 홈페이지 제작비용
- 광고비 결제를 위한 온라인 거래화폐(캐시 등) 충전 금액
- 사업자 미등록 및 정식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현지 개인 SNS 플랫폼 및 인플루언서 홍보
- 홍보에 수반되는 물품 운송비 등

[사유 기준]

- 협약기간 외 홍보/광고를 수행하는 경우
- 광고 게재되지 않고, 홍보/광고에 수반되는 동영상 및 콘텐츠만 제작하는 경우
-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한 경우만 가능하며, 대행기관(바우처 사업에 지정되지 않은 非 수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 단, 해외매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현지 독점에이전트 등으로 국한되며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외매체의 공문 등) 제출 시 정산가능여부 검토 가능

기타 주의 사항

-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록 홈페이지 제작비용일 경우 디자인 개발 서비스로 정산요망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유상 수출품 및 유상거래 샘플 운송
 - 수출자가 부담* 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적하 보험료
 - * 인코텀즈 거래조건인 C조건(CFR-CIF-CPT-CIP) 및 D조건(DAP-DPU-DDP)에 해당
 -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보안할증료, 저유황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결제방법, 결제금액 기준으로 확인
- 국제 특송 이용료 (EMS, TNT, FEDEX, DHL 등)
 - 총 이용료의 70% 한도 내 인정

제출 증빙

	일반국제운송	국제특송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별지 제 15-1호] ○ 수출·통관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송장(C/I) - 패킹리스트(P/L)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수출신고필증 - 보험 가입 증서(해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별지 제 15-2호] ○ 수출·통관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송장(C/I) - 패킹리스트(P/L) -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Tracking number 리벨지 - 수출신고필증 - (신청 30건 이상) 수출신고 리스트* *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통해 양식 다운로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약서 [별지 제8호] ○ 집행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사(포워드) 또는 선사 발급 인보이스(상세 운임 내역 기재) - 물류사(포워드) 또는 선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세 발생시,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제출서류 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 서류상 화주는 참여기업, 수입자는 현지거래선(원부자재(중간재)일 경우 자사 현지법인 또는 지사)이어야 함 	

정산 불가 항목

[결과물 및 비목 기준]

- 무상거래품 운송비 * 완제품, 샘플 등 종류 불문
-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경우에도 정산 불가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창고보관료 등 부대 비용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 도착국 통관 후 발생하는 운송 비용
- 각종 문서 송달비용

[사유 기준]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EXW · FCA · FAS · FOB) 수출거래일 경우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해외→해외) 운송일 경우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목록(간이) 통관으로 진행된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증빙 기준 선적일이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만 정산 가능
- 협약 기간 누계 2천만원(바우처 금액기준) 한도 내 정산 가능
- 해륙 복합운송 정산 조건부 가능
 - * 목적지의 지리적 특성으로 내륙지점까지 B/L을 발행했으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통관지까지 보세운송으로 진행한 비용에 한정
(예 : 한국→(해운)→중국→(철도)→몽골, 한국→(해운)→롱비치→(철도)→시카고/디트로이트 등)
- [별지 제7호] 인코텀즈 거래조건별 정산 대상 적용
- [별지 제15호] 결과보고서 양식 활용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수출관련 서류대행 및 현지등록 (수입관련 미지원)
 - 계약서 작성 대행 등 컨설팅
 -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 관련서류, 수출물류 서류 작성 컨설팅
 - 무역자동화, 사후관리 대행
 - FTA 원산지 관련 서류
- 신용인증 서비스
 - 참여기업 자사 해외신용등급조회 (영문보고서 발급) 서비스
-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등 현지등록 대행
- 현지 입점대행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
 - 현지 입점을 위한 서류준비, 신청 등 대행
 - 공공조달 낙찰자격 유지를 위한 관납수수료* 등
- * 단, 관납료 대납 단독으로는 정산 불가하며, 공공조달 입찰 과정 대행의 일부 항목으로 정산 가능
- AEO 공인 획득 지원
 - AEO 공인에 필요한 컨설팅 소요비용(공인·종합심사, 자체평가)지원
- * AEO 공인을 획득과 관련된, 기업내 시스템 구축비용은 지원 불가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표준 결과보고서 [별지 제 1호]
 - ④ 표준 세부산출내역서 [자사 양식], [별지 제 17-1,2,3,4] 참고
- AEO 공인 단계별 추가 제출 증빙

구 분	기한 내 종결	기한 내 미결
공인심사	AEO 공인인증서 사본	AEO 공인심사 신청 처리현황 증빙
종합심사	AEO 공인인증서 사본	AEO 종합심사 신청 처리현황 증빙
자체평가	AEO 자체평가 수행 증빙	AEO 자체평가 신청 처리현황 증빙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 국내용 신용등급 조회
- 물품 수입용 서류대행 / 현지등록비

기타 주의 사항

- [별지 제13호] 세부 분야별 표준 단가 적용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제출 증빙
○ 공통 제출 증빙

- ① 전자(세금)계산서(수행기관→참여기업)
- ②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③ 표준 결과보고서 [별지 제 1호]
- ④ 컨설팅 완료보고서
 - * 수행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한 보고서이며, '③ 표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⑤ 표준 세부산출내역서
 - * 단기적 이슈 해결을 위한 자문 제공 시 : [별지 제 17-3호] 적용/제출
 - * 중장기적 이슈 해결을 위한 자문 제공 시 : [별지 제 17-4호] 적용/제출

○ 선금신청 시

- ① 표준계약서[별지 제 14호]
-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운영기관용, 참여기업용)
- ③ 선금 세금계산서
- ④ 부가세 입금확인증
- ⑤ 입금통장 사본

정산 불가 항목

- 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직접비용 (인증비, 심사비, 소송비 등)
- 수출 및 해외진출 목적이 아닌 수입 업무 관련 컨설팅
- 인용된 내용에 출처가 없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 * 표절검사 시 6어절 기준 표절률이 30% 이상 또는 자기표절률이 50% 이상인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별지 제13호] 세부 분야별 표준 단가 적용

IV. 참여기업의 사후 개별정산 관련 지침

□ 적용 범위

-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이 ①해외전시회개별참가 ②항공임 ③해외홍보/광고 ④해외규격인증 취득 ⑤국제운송 ⑥무역보험·보증 비용을 직접 집행한 후 KOTRA 운영기관에 사후 개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비용 직접 집행 및 사후 개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 정산 가이드 내 II. 적용범위 및 정산 일반사항 내 2.공통 적용 지침 가~라 항 준용함(p.8~10)

□ 기타 유의사항

- (정산 범위 판단권한 및 사전확인 의무)
 - 참여기업은 정산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각 서비스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총괄수행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 경우, KOTRA 운영기관에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KOTRA 운영 바우처 사업 및 운영기관 (2023.9.1.기준)>

사업명	KOTRA 운영기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수출바우처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중견기업팀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KOTRA 경기지원단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KOTRA 광주전남지원단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지원사업	KOTRA 충북지원단
충북 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 (해외법인, 해외지사 통한 대납) 참여기업과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현지 법인등록증, 주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주거래은행의 해외투자계획서
- (해외 송금 적용환율) 송금증 상 적용환율 또는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 송금증, 매출전표에 적용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환율 적용
 -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 송금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털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1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참여기업이 직접 집행한 온·오프라인 국제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불가피하게 전시회 비용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경우는 KOTRA 운영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전시회가 종료된 건에 한해 집행 후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1. 해외/국내 전시회

○ 적용범위

-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국제전시협회 UFI 국제인증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AKEI 국제인증)

- ① **UFI 국제인증** : ufi.org 접속 → 메인화면 하단 "Events Approved by UFI being held today" → Search Events → Event Type "UFI Approved International Event" 필터링 후 조회
- ② **AKEI 국제인증** : 전시회포털 쇼알라 접속(showala.com) → 전시회 찾기 → 인증구분 "AKEI 국제인증" 필터링 후 조회

- (한시)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인증하는 2023.2.1. ~ 2023.12.31. 개최 국내 전시회이면서 동시에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

- ① 오프라인 전시회에 해외바이어 참석 규모가 10명 이상인 경우
- ②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수출상담회가 개최되며, 해당 상담회에 해외바이어 참석 규모가 10명 이상인 경우
- ③ 오프라인 전시회와 영문판 온라인 전시회가 개최되며,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실시간 상담 및 견적서 발행기능을 갖춘 경우

○ 정산 지원항목

-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 부스·장비 제작 및 설치비(디자인비 포함)*, 추가 장치비(부스용 모니터 임차 등 비용)
 - * 부스, 장치 국내에서 제작 후 해외 반출시 총 제작비의 50% 한도 내 지원
- 전시 물품(샘플) 편도(국내입고지~전시장 부스 앞 구간) 운송비
 - * 국내개최 전시회 운송비, 국제특송(DHL) 및 핸드캐리비용 지원 불가
 - * 샘플운송비는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85번, 92번 및 결제방법 GN일 때만 지원되며 샘플 외 판매용 수출 물품 운송비 지원불가, 전시회 참가를 위한 샘플 현지 창고보관료 지원 가능
- 인보이스 내 명시된 전시회 주최사의 공식 홍보 마케팅 서비스*
 - * 전시회 디렉토리/카탈로그/홈페이지 내 기업 안내 게재, 특별관(부스위치) 선점, 광고 등
 - * 부스 기본제공 품목 외 추가 소모성 제품(모니터, 스피커, 프로모션 아이템 등) 임차비 지원불가
-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통역, 안내요원, 바이어 섭외 관련 서비스 비용

2. 온라인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오프라인 전시회가 온라인 개최로 전환된 경우에 한하여 전시회 비용 지원
- * 단, UFI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전시회인증 받은 온라인전시회는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오프라인 전시회 지원항목(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등)에 준하는 참가등록비 및 콘텐츠* 제작비
- * 예) VR전시회 온라인부스(콘텐츠) 제작비는 부스임차료 및 설치비와 치환되므로 지원가능

제출 증빙	
해외개최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온/오프라인 국제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직접 참가 시 - 참여기업 서약서[별지 제 4호] - 전시회 부스임차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필수 포함) [별지 제3호] * 부스명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업체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증빙 추가제출 - 해외바이어 상담일지 [별지 제2호] - 인보이스 - 송금증 등 납입증빙 * 송금 적용환율이 표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송금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털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캡처본 추가 제출 - (해당 시) 전시 주최사 공식 홍보 마케팅 서비스 이용 증빙 * 홍보/광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사본 및 영상녹화물 - (해당 시) 해외 납부 세금 환급 관련 서약서 [별지 제6호] - (해당 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국제인증 증빙 ○ 온라인 전시회 추가증빙 - 온라인 전시콘텐츠 제작비 ○ 대행기관(비 수행기관) 통한 참가 시 추가증빙 - 전시주최-대행기관 간 계약서,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 AKEI 인증 국내 전시회 추가 증빙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발급 국내인증전시회 인증서 - 하기 수출지원 요소 3가지 중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발급 전시회 개최 결과보고서 (해외바이어 참석규모 증명용) ② 온라인 수출상담회 캡처본(상담일지 별도) ③ 영문판 온라인 전시회 부스 캡처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비 증빙 - 왕복운임 인보이스(견적서) - 세금계산서 - B/L - 수출신고필증* 또는 ATA까르네 - 패킹 리스트 등 * 거래구분 85번, 92번 한해 지원 	

정산 불가 항목

[항목 기준]

- 현지 교통운임, 체재비, 통신비
- 국제특송비, 핸드캐리 운송비
- 단순 현지 체류지원을 위한 통역 고용비
- 민간 에이전트, 협단체 등 대행기관 통한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
-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 자료 인쇄비
- 자산 취득비
- 전시회 주최사 공식 홍보내역 이외의 홍보비

[사유 기준]

-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 (일부 지원 포함)을 받은 경우
* 정부부처정부부처(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전시회의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
-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미인증 국내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 전시회 개최기간 전체가 협약기간 외* 발생한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협약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 신청 선납금은 협약기간 이전 납부하였어도 정산 가능
- 통역사의 활동보고서(전시회장 배경 사진 포함), 통역사 신분증 사본, 통역계약서 및 비용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전시회 통역비 사후정산 허용
- 전시회 통역비로 정산 받은 경우, 통번역 서비스로 중복 정산신청 및 지원 불가
- [별지 제3호] 전시회 참가결과 보고서 양식
- [별지 제4호] 사후정산 서약서 양식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6항에 따라,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여하고 이를 바우처로 사후정산 처리한 경우 소요된 참여기업의 해외출장 항공임은 정산이 가능하다. KOTRA 해외전시팀에서 주관하는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을 받은 참여기업은, 관련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 항공임을 바우처로 사후정산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운영기관의 항공임 사후정산 검토는 i)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 서비스 또는 ii) 해외전시회 개별참여 사후정산이 완료(정산입금여부등록 단계)된 이후⁴⁾ 또는 iii) KOTRA 해외전시팀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사후정산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가한 해외전시회 연계 해외 출장 항공임
 - (수행기관 활용)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메뉴판에 등록된 전시회 메뉴 이용 및 해당건 출장에 소요된 왕복 국제항공임
 - (수행기관 미활용) 해외전시회 참여에 대한 사후정산을 기승인 받은 기업의 해당 건 출장에 소요된 왕복 국제항공임
 - 전시회 전 당 최대 2인의 이코노미석 항공임
 - (등급) 이코노미석(Y클래스 이하) 지원, 자비(마일리지 포함) 좌석 업그레이드 허용
 - (대상직원) 참여기업 대표 또는 해외영업 담당 직원 한정
 - (허용기간) 전시회 개최 및 폐막일 전후 7일 이내(주말 포함) 출도착(현지시각 기준) 항공권
 - (경유여부) 직항노선 지원 원칙,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만 검토후 경유편 인정
- * 직항 부재 및 불가항력에 의한 대체(경유)편 이용, 직항과의 과도한 운임 차이 등

4) 참여기업은 전시회 참가서비스(사후정산 포함)에 대한 정산요청 이후, 수출바우처포털 상에서 항공임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증빙

- ① 참가전시회 결과보고서 [별지 제 3호]
- ② 참여기업 왕복 국제항공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
- ③ 해외납부 세금 환급 관련 서약서[별지 제 6호]
- ④ 구매영수증(카드결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입금증)
- ⑤ 여정확인서(e티켓)*
 - * 여정확인서와 탑승권 간 예약번호 또는 항공권 번호가 일치해야 정산가능
 - * 탑승자 성명 날짜 좌석등급 목적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연결편이 있는 경우 전체여정에 대한 탑승권 사본 일체 제출필수
- ⑥ 탑승권 사본**
 - * 단, 훼손 등으로 제출 불가 시, 민원 24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 ⑦ 탑승자 기록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⑧ (해당 시) KOTRA 해외전시팀 해외전시 개별참가 관련 선정 및 지원금 교부확인 공문

정산 불가 항목

[항목 기준]

- 국내항공임 및 편도항공임 등
- 전시회 개최지역으로의 직항노선이 있는 경우 경유 항공임*
 - * 인정 : 직항과의 과도한 운임 차이 등 (운임차이 비교 견적 첨부 필요)
 - * 미인정 : ①경유지 24시간 초과 체류, ②관광지 경유, ③3회 이상의 과도한 환승여정 등
- 수화물·기내식 추가비용, 유아·반려동물 동반운임, 여행사 수수료(부가수수료, 취급수수료 등)
- 항공권 취소·변경수수료 등
- 숙박비, 식비, 일비 등 기타 출장비
- 육로·해상운임 및 국내구간 운임

[사유 기준]

- 협약기간 외에 출장을 시행한 경우
- 출발편 출발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
- 도착편 도착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
- 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시회 비용 또는 항공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은 경우
- 전시회 부스참가가 아닌 사전·후속 활동 또는 단순 참관일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별지 제5호]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 활용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해외 TV, 신문(온라인 포함), 전문 잡지(온라인 포함), 정기간행물 등 광고 게재 비용
 - * 해외 전문 잡지 및 간행물의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이 등록된 경우 지원
- 해외 고객 대상 공중파(케이블 등 포함) 및 웹드라마 활용 PPL비용
- SNS 및 포털사이트 검색, 배너광고, 동영상 광고 등
- 해외 B2C, B2B 사이트 등록비
-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마케팅
-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제출 증빙

- ① 결과보고서[별지 제 9-1호]
- ② 인보이스(Invoice) 및 입금증(송금증) 등 지출내역
- ③ 서비스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홍보/광고 계약서 또는 홍보/광고신청서*
 - * 홍보/광고신청서 없을 시 서비스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신청확인 화면 / 관리자계정 화면 캡처로 대체 가능
- ④ 홍보 결과물 * 광고 사본, 영상녹화물, SNS·검색엔진 마케팅 이용 결과 리포트 등
- ⑤ 해외납부 세금 환급 관련 서약서[별지 제 6호]
- ⑥ 기타 세부 유형별 추가 증빙 [별지 제 9-3호]

정산 불가 항목

[결과물 기준]

- 국내 매체 광고 및 한국어 광고
- 해외 현지 입간판, 옥외광고
- 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임차료, 장치비 등
- 전단지(단순 인쇄), 유사 신문 등 정식 매체로 등록되지 않은 매체를 통한 홍보
- 개별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광고
-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록 홈페이지 제작비용
- 광고비 결제를 위한 온라인 거래화폐(캐시 등) 충전 금액
- 사업자 미등록 및 정식 계약체결이 불가한 현지 개인 SNS 플랫폼 및 인플루언서 홍보
- 홍보에 수반되는 물품 운송비 등

[사유 기준]

- 협약기간 외 홍보/광고를 수행하는 경우
- 광고 게재되지 않고, 홍보/광고에 수반되는 동영상 및 콘텐츠만 제작하는 경우
- 참여기업-홍보매체간 직접계약이 아닌 참여기업-홍보대행사(에이전트*) 계약일 경우
 - * 단, 특정 상황상 현지 독점에이전트를 통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검토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증빙할 자료(해외매체의 공문 등) 추가제출 필요

4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관련 시험/심사/인증 전문 서비스 지원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협약기간 내 완료된 해외 규격인증, 시험
- 협약기간 내 부분 완료된* 해외 규격인증, 시험
 - * 성실실패제도 : 수행내용이 성실하고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 시 인증 절차 비용 일부 보전가능
- 서비스 진행 과정, 정산기준, 분야별 최대 지원한도 등 세부 지원사항 관련 [별지 제 20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가이드 참조

진행 방법	참여기업은 Two-Track 으로 해외규격인증 진행 후 수출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바우처정산 진행								
(지정형) Track1 수행기관 이용	설명	·참여기업 : 등록된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계약 후 인증획득 진행 의뢰 ·수행기관 : 인증획득 진행 및 결과물(결과보고서) 검수 요청 및 바우처 정산진행							
	진행 방법	수행기관 선택 참여기업	⇒	바우처 계약 참여/ 수행기관	⇒	인증획득 진행 참여/ 수행기관	⇒	검수 총괄수행	⇒
(개방형) Track2 참여기업 직접수행	설명	참여기업이 직접 시험·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획득 진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검수 요청 및 사후 정산진행							
	진행 방법	인증획득 진행 참여기업	⇒	검수 총괄수행	⇒	사후정산 운영기관			

제출 증빙

- ① 입금증(송금증)
- ② 인증결과물(인증서, 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등)
- ③ 서약서 *지정형, 개방형 양식 구분
- ④ 인보이스 또는 금액 명시된 계약서
- ⑤ 입금통장 사본
- ⑥ 해외납부 세금 환급 관련 서약서[별지 제 6호]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항목

- 유상 수출품 및 유상거래 샘플 운송
 - 수출자가 부담* 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적하 보험료
 - * 인코텀즈 거래조건인 C조건(CFR·CIF·CPT·CIP) 및 D조건(DAP·DPU·DDP)에 해당
 -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보안할증료, 저유황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결제방법, 결제금액 기준으로 확인
- 국제 특송 이용료 (EMS, TNT, FEDEX, DHL 등)
 - 총 이용료의 70% 한도 내 인정

제출 증빙

	일반국제운송	국제특송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별지 제 15-1호] ○ 수출·통관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송장(C/I) - 패킹리스트(P/L)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수출신고필증 - 보험 가입 증서(해당 시) ○ 집행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사 또는 선사 발급 인보이스(상세 운임 내역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 참여기업 입금증 등 선집행 증빙자료 * 제출서류 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별지 제 15-2호] ○ 수출·통관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송장(C/I) - 패킹리스트(P/L) -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Tracking number 리벨지 - 수출신고필증 - (신청 30건 이상) 수출신고 리스트* *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통해 양식 다운로드 ○ 집행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특송 업체] 운임 인보이스 및 지로통지서 입금증 등 참여기업 선집행 증빙자료 - [우체국 카드전표 (Tracking number 별 운임 기재)] * 제출서류 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약서 [별지 제8호] ○ 집행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사(포워드) 또는 선사 발급 인보이스(상세 운임 내역 기재) - 물류사(포워드) 또는 선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세 발생시, 부가세 입금증(송금증)(참여기업→수행기관) * 제출서류 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 서류상 화주는 참여기업 수입자는 현지거래선(원부자재(중간재)일 경우 자사 현지법인 또는 지사)이어야 함 	

정산 불가 항목

[결과물 및 비목 기준]

- 무상거래품 운송비 * 완제품, 샘플 등 종류 불문
-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경우에도 정산 불가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창고보관료 등 부대 비용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 도착국 통관 후 발생하는 운송 비용
- 각종 문서 송달비용

[사유 기준]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EXW · FCA · FAS · FOB) 수출거래일 경우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해외→해외) 운송일 경우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목록(간이) 통관으로 진행된 경우

기타 주의 사항

- 증빙 기준 선적일이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만 정산 가능
- 협약 기간 누계 2천만원(바우처 금액기준) 한도 내 정산 가능
- 해륙 복합운송 정산 조건부 가능
 - * 목적지의 지리적 특성으로 내륙지점까지 B/L을 발행했으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통관지까지 보세운송으로 진행한 비용에 한정
(예 : 한국→(해운)→중국→(철도)→몽골, 한국→(해운)→롱비치→(철도)→시카고/디트로이트 등)
- [별지 제7호] 인코텀즈 거래조건별 정산 대상 적용
- [별지 제15호] 결과보고서 양식 활용

6

무역보험 · 보증 수출 관련 보험 · 보증 서비스

- 관리지침 제27조의 2 제7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환변동보험,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를 수출bauer로 사후정산 신청할 수 있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정산 가능 서비스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참여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및 기타 수출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 신용도를 보강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
- 단기수출보험 : 참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서비스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수출기업이 보험가입을 위한 수입자 유효등급 산출 및 바이어 기본정보·신용도 조회
 - * 단기수출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요약보고서만 지원대상에 포함(Full Report는 지원 제외)
- 환변동보험 :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헷징 서비스
-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현지 추심기관 등과 연계하여 채권 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
 - * 해외 채권회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지원금액에 해당(한국무역보험공사 가산수수료는 지원 제외)

제출 증빙

연번	서비스명	서비스 완료 기준	정산증빙 서류
1	단기수출보험	· 보험기간 종료일	· 수출보험증서 · 수출보험료 영수증 · 결제통지내역증빙(선택)**
2	환변동보험	· 보험기간 종료일	· 환변동보험증서 · 환변동보험료 납부통지서 · 환변동보험료 납부영수증 · 결제통지내역증빙(선택)**
3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보증기간 종료일	· 수출신용보증서 · 수출신용보증 납부통지서 ·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영수증
4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용조사 수수료 수납완료일	· 신용조사 보고서 · 신용조사 수수료 수납완료 안내메일 · 세금계산서
5	해외채권 회수대행	· 회수금을 채권자 또는 추심 위임기관이 수령한 일자	· 대외채권 추심대행 수수료 납부확인증 · 세금계산서

정산 불가 항목

- 타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대행사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역보험·보증 서비스 정산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서비스별 완료일 기준일자가 참여기업의 수출바우처 협약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 보험·보증 가입기간 중 취소를 한 경우, 취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산 불가
-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정산 불가

기타 주의 사항

- 무역보험·보증 대분류 기준 협약기간 누계 최대 1천만원협약 바우처 총액 기준 이내에서 정산 가능
- 단기수출보험/환변동보험은 보험계약기간 종료 전 결제통지가 완료된 경우, 결제통지내역 증빙* 구비하여 결제통지일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조기 신청 가능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 단기수출보험·결제통지조회 화면·환변동보험·보험금/이익금 조회

K O T R A